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810,511,201	27,054,334
일반회계	697,221,385	20,916,642
특별회계	113,289,816	6,137,692
기타특별회계	21,254,672	637,639
• 주택사업특별회계	792,071	23,762
• 교통사업특별회계	15,553,749	466,612
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,564,038	136,921
• 기반시설특별회계	344,814	10,344
공기업특별회계	92,035,144	5,500,053
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	32,392,579	971,777
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	50,942,565	1,528,276
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8,700,000	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794,977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